

제5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회의 결과

회의명	◦ 제5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일 시	◦ 2018. 11. 2.(금) 14:30~16:30		
장 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참 석	◦ 재적위원 : 28명		
	◦ 참석위원 : 15명 ※ 대리참석 5명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공동의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송준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안성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지문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조현욱(代)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윤순철(代)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김윤식(代)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김병섭(공동의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서상기 여성신문 사장 김호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인섭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삼열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행정부회장 윤승한(代)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허승호(代)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준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한무경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종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금숙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부패학회 회장 김진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성장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서상목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백미순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선희 한국방송협회 회장 박정훈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한국감사협회 회장
		◦ 공석 : 2명	

회의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공익법인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②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정책·제도개선, ③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명의로 제안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심의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법인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 동의, 제안 항목을 일부 수정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결정 - 외부감사인 배정 시 무작위 배정을 통해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고, 외부감사인 풀 구성에 집중해야 함 - 외부감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일시적인 업무이고, 포획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부감사 이후 구성원들이 결과를 확인하는 등 당사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해야 함 - 공동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의무관리 대상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 투명성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외부감사인 제도를 의무관리 대상까지 확대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임 -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들이 3분의 2이상 동의를 하면 자율적으로 외부감사를 할 수 있고, 법으로 외부감사가 의무화된 대상 외로 확대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 되어야 함 ◦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정책·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 동의 ◦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 동의, 전문 및 제안 항목을 일부 수정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결정 -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려면 2년이 가능한 방안일 것임 - 대법관이 대법원의 사건을 영구히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임의 지식, 경험을 낭비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음 - ‘예우’ 라는 표현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대접한다는 좋은 의미로,

회의명	<p>◦ 제5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p>
	<p>바람직한 못한 현상을 부르기에는 적절치 않으므로 ‘전관비리’ 또는 ‘전관특혜’ 로 표현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위기 쇄신의 차원에서 고위 법조공직자의 기준을 낮춰서 수임 제한 등의 제안을 해야 함 - 수임제한 기간을 퇴임 공직자가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기로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붙임]

청 럽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공익법인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공익법인, 사립대학,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강화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회계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1. 회계감사를 받는 대상이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이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외부감사인 풀(pool)을 구성하여 무작위 배정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한다.
2.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사결과에 비영리법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재무제표 외의 추가적인 확인사항을 함께 기재한다.
3. 회계감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4. 위 방안은 현재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 사립대학을 설치한 학교법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우선 적용하되, 추후 다른 분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한다.

2018년 11월 2일

청 럽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특수활동비 편성 및 집행관리 정책·제도개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의 부당한 특수활동비 편성·집행 관행을 중단하여 재정 낭비와 부패를 근절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개념인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삭제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한다.
2. 정부와 국회는 업무 특성 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요구를 중단하거나 그 규모를 감축하고, 기획재정부 등은 외부 전문가의 참여 하에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이 제출한 예산편성 요구안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3.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국회와 정부기관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선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실제 특수활동 수행자에게 지급한다.
4. 정부는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와 국회는 수사·정보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5. 감사원 등은 특수활동비 부당 사용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한다.

2018년 11월 2일

청 럽 사 회 민 관 협 의 회 제 안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조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수사 및 재판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유리한 처분을 받는 소위 '전관예우' 관행을 '전관특혜' 또는 '전관비리'로 규정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조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일정기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 제한기간 동안 법조연구·교육 등 공익적 활동을 하도록 권장한다.
2. 공직에서 퇴임하여 개업한 변호사가 퇴임 전 소속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현행 1년)을 연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한다.
3. 법관이 퇴직 후에도 경륜을 활용하여 재판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법관 제도를 도입한다.
4.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의 공개 및 심사절차의 강화 등 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2018년 11월 2일